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기 후 · 기 후 변 화 감 시 및 예 측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완섭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책 마련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실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5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양성기관 지정·지정취소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 의견 수렴을 위한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를 정함(안 제2조).

나.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요건, 자격취소 또는 정지기준을 규정함(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명칭 및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2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시기 및 내용 등)

- ① 기상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라 한다) 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활용한 표준시나리오의 종류 및 요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표준시나리오 활용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후예측정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등 기후변화예측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제공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2 및 별표 2의2”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전문인력의 국내 및 국제 활동 지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의 내용, 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등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기준 등)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장비 보유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의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상청장은 법 제

23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의 제목 중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관련)”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개발)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관련)”을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개발)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제17조제1항 관련)”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중 “사람으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의 지정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지정 기준
1. 인력	가. 상시 근무하는 교육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 전문 교수요원은 교육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나. 상시 근무하는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전문 교수요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1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된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전문 교수요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기상·기후·해양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기상·기후·해양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상·기후·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3) 기상·기후·해양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상·기후·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4) 기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기후·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기상·기후·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상·기후·해양 관련 학과에서 강의 경력이 8학기 이상인 사람
2. 시설	사무실 및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 업무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최근 5년 이내 기상·기후·해양 분야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

비고

1. “기상·기후·해양 분야”란 기상학, 기후학, 대기과학, 대기환경학, 해양학 또는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2. “기상·기후·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

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에서 기후·기후변화·해양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3. “기상 관련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기술사 또는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한다.

[별표 2의2]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 기준
(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지정 기준
1. 인력	가. 상시 근무하는 교육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 전문 교수요원은 교육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나. 상시 근무하는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전문 교수요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1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된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전문 교수요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의 자격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기후·해양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기후·해양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후·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3) 기후·해양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후·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4) 기후·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후·해양 관련 학과에서 강의 경력이 8학기 이상인 사람
2. 시설	사무실 및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 업무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최근 5년 이내 기후·해양 분야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

비고

1. “기후·해양 분야”란 기후학, 대기과학, 기후환경학, 해양학, 해양환경과학 또는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2. “기후·해양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란 해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해

양수산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기후변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별표 5]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제1호	자격 취소		
나.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제2호	자격 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제3호	자격 정지 1년	자격 정지 3년	자격 취소

[별표 6]

과태료 부과 기준(제2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150	250	300

비고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기후·기후 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삭 제></u>
④ (생 략) ⑤ <u>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u> ⑥ (생 략) <u><신 설></u>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시기 및 내용 등) ① <u>기상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u>

있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 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활용한 표준시나리오의 종류 및 요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표준시나리오 활용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후예측정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등 기후변화예측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제공한다.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

-----.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의 지정 기준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2의 지정 기준

② ~ ⑤ (생략)

<신설>

1. -----
----- 별표 1 및 별표 1의2

2. -----
----- 별표 2 및 별표 2의2-----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 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전문인력의 국내 및 국제 활동 지원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 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등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의 내용, 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등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기준 등) 법 제23조의 2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신 설>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속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
후·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
한 법인

4.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후·기
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
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

<신 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장비 보유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요원, 교육시설·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의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

<u><신 설></u>	<u>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해야 한다.</u> <u>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기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7388